



제1572호

2020년 11월 12일

목요일

|        |       |
|--------|-------|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공 고**

|                  |            |                                               |     |
|------------------|------------|-----------------------------------------------|-----|
| ○ 공              | 고 제 2149 호 |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 출입공고                          | 2   |
| ○ 공              | 고 제 2164 호 |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 토지 출입 공고                        | 4   |
| ○ 공              | 고 제 2172 호 | 남동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                        | 5   |
| ○ 공              | 고 제 2182 호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4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56 호 |            |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22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58 호 |            |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40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59 호 |            |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57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0 호 |            |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71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1 호 |            |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80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2 호 |            |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93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3 호 |            |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07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4 호 |            |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21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6 호 |            |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40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7 호 |            |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52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8 호 |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63 |
| ○ 의회사무국공고 제 69 호 |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170 |

**고 시**

|     |           |                     |     |
|-----|-----------|---------------------|-----|
| ○ 고 | 시 제 177 호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결정 고시 | 182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0-2149호

##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토지 출입 공고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지구 내 보상업무 수행을 위한 출입 통지가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5일

###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시 행 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
2. 사 업 의 종 류 : 이승훈역사공원 조성사업
3. 출 입 대 상 지 : 남동구 장수동 659-3 외 24필지 [붙임참조]
4. 출 입 할 목 적 : 기본조사 등 보상업무 수행
5. 출 입 기 간 : 2020. 11. 9. ~ 사업완료일까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032-440-58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역사공원 출입대상 토지조서

☐ 토지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 지 번    | 지목 | 공부면적<br>(㎡) | 편입면적<br>(㎡) | 비고 |
|------|-----|-----|--------|----|-------------|-------------|----|
|      | 구   | 동   |        |    |             |             |    |
| 합 계  |     |     |        |    | 340,140     | 45,792      |    |
| 1    | 남동구 | 장수동 | 659-3  | 답  | 37          | 6           |    |
| 2    | 남동구 | 장수동 | 659-7  | 답  | 61          | 11          |    |
| 3    | 남동구 | 장수동 | 659-15 | 답  | 81          | 1           |    |
| 4    | 남동구 | 장수동 | 659-16 | 답  | 136         | 11          |    |
| 5    | 남동구 | 장수동 | 660-2  | 전  | 593         | 416         |    |
| 6    | 남동구 | 장수동 | 660-3  | 창  | 200         | 124         |    |
| 7    | 남동구 | 장수동 | 660-11 | 전  | 221         | 221         |    |
| 8    | 남동구 | 장수동 | 660-12 | 전  | 1,304       | 1,094       |    |
| 9    | 남동구 | 장수동 | 660-13 | 전  | 194         | 184         |    |
| 10   | 남동구 | 장수동 | 661    | 답  | 528         | 412         |    |
| 11   | 남동구 | 장수동 | 662-2  | 전  | 1,030       | 1,023       |    |
| 12   | 남동구 | 장수동 | 662-3  | 창  | 728         | 671         |    |
| 13   | 남동구 | 장수동 | 662-4  | 답  | 266         | 174         |    |
| 14   | 남동구 | 장수동 | 662-11 | 전  | 78          | 2           |    |
| 15   | 남동구 | 장수동 | 662-13 | 도  | 121         | 6           |    |
| 16   | 남동구 | 장수동 | 662-15 | 도  | 352         | 127         |    |
| 17   | 남동구 | 장수동 | 666    | 수  | 82,963      | 747         |    |
| 18   | 남동구 | 장수동 | 727-1  | 천  | 56          | 55          |    |
| 19   | 남동구 | 장수동 | 727-2  | 천  | 203,758     | 2,323       |    |
| 20   | 남동구 | 장수동 | 727-28 | 천  | 167         | 167         |    |
| 21   | 남동구 | 장수동 | 754    | 도  | 2,793       | 298         |    |
| 22   | 남동구 | 장수동 | 산132-8 | 임  | 1,501       | 1,501       |    |
| 23   | 남동구 | 장수동 | 산132-9 | 임  | 15,926      | 15,926      |    |
| 24   | 남동구 | 장수동 | 산134   | 임  | 6,864       | 239         |    |
| 25   | 남동구 | 장수동 | 산135-3 | 임  | 20,182      | 20,053      |    |

**공 고**

남동구공고 제2020-2164호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 토지 출입 공고**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의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9일

**남 동 구 청 장**

1. 사 업 시 행 자 : 남동구청
2. 사 업 의 명 칭 : 만의골 경관광장 조성사업
3. 출입할 토지 대상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62, 장수동 63-1, 장수동 63-2, 장수동 73, 장수동 73-1, 장수동 74
4. 출 입 할 목 적 : 측량, 토지 및 물건확인, 감정평가 등
5. 출 입 기 간 : 2020. 11. ~ 보상완료일 까지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원녹지과(☎032-453-6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0-2172호

## 남동구 노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

남동구 노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0일

## 남 동 구 청 장

## 1. 채용인원 및 채용기간

- 채용인원 : 노현종합사회복지관장 1명
- 채용기간 : 2년(2021.1.1.~2022.12.31.)

## 2.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 3. 응시자격

- 자격요건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주소제한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 된자(단,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연령제한 : 1957. 7. 1.이후 출생자
- 응시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시설의장)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4. 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0.11.19.(목)~11.25(수) [5일간]
- 접수장소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2층)
  - 근무시간(09:00~12:00, 13:00~18:00)내 방문접수에 한함
  - 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칼라사진 3.5cm×4.5cm 부착
  - 이력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붙임 양식 출력 사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붙임 양식 출력 사용)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6. 시험구분 및 일정

| 구 분      | 일 정                  | 장 소          | 합격자발표        |
|----------|----------------------|--------------|--------------|
| 서류전형(1차) | 2020. 11.26.~ 11.27.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 2020. 11.27. |
| 면접시험(2차) | 2020. 12.03.         | 남동구청 (개별통지)  | 2020. 12.04. |

- ※ 서류전형 접수시 1명 접수시는 재공고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적의 변경될 수 있음
-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는 추후 홈페이지 게시

## 7.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표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채점결과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없을시 재모집 공고

## 8.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0. 12. 04.(금)
- 방법 : 개별통지
- ※ 최종합격자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시 합격취소

## 9.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제출일 : 합격통지 후 7일 이내
-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소, 병역사항 포함)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 ※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일 내 미제출시 합격취소
  - ※ 합격자는 2021.1.1부터 해당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여야 함

## 10.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내용의 착오, 누락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관련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5. 보수 및 근무조건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공통 지침」 및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 지침」에 따름
- 근무형태 : 주5일, 1일 8시간 근무(9:00~18:00)
- 근무지 : 논현종합사회복지관
- 보수 : 사회복지이용시설 직원 봉급 및 수당 기준표에 따름

- 면접시험응시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집합하여야 함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통지)
- 제출한 서류는 2021.1.2.~3.31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7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11. 시험관련 문의처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453-2502

## 응 시 원 서 (원 본)

남동구청장 귀하

남동구 노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채용시험에 응시 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취소 또는 고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명 )

2020년 월 일

|             |                          |       |       |                   |           |
|-------------|--------------------------|-------|-------|-------------------|-----------|
| 주 소         | ( )                      |       |       |                   |           |
| 최 종 학 력     | 대학교명:                    | ( )   | 전공) / | 년                 | 월 졸업      |
|             | 대학원명:                    | ( )   | 전공) / | 년                 | 월 졸업. 수료. |
| 최 종 경 력     | 년 월부터 년 월까지 (직장명: /직위: ) |       |       |                   |           |
| 응 시 번 호 (※) |                          | 성 명   | (한 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여부   |           |
|             |                          |       | (한 자) |                   |           |
| 응 시 분 야     | 노현                       | 생년 월일 | -     | 종목및등급 :<br>등록번호 : |           |
|             |                          |       |       | 확인(※)             |           |

|               |    |        |       |                    |  |
|---------------|----|--------|-------|--------------------|--|
| 응 시 원 서 (부 분) |    |        |       | 사 진(1)             |  |
| 응 시 번 호 (※)   |    | 성 명    | (한 글)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  |
|               |    |        | (한 자) | 탈모 상반신 사진          |  |
|               |    |        |       | (3.5cm×4.5cm)      |  |
| 응 시 분 야       | 노현 | 주민등록번호 | -     |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  |
|               |    |        |       |                    |  |

|             |       |                        |   |  |        |
|-------------|-------|------------------------|---|--|--------|
| 응 시 표       | 성 명   | (한 글)                  |   |  | 사 진(2) |
| 응 시 번 호 (※) | 생년 월일 |                        | - |  |        |
|             |       |                        |   |  |        |
| 응 시 분 야     | 노현    | 2020년 월 일<br>남 동 구 청 장 |   |  |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접수처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을 지참하여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면접 대기 장소에 오셔서 본인 확인을 받으신 후 면접시험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아래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되 성명과 서명은 반드시 본인의 필체로 기재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한다.
- ② 학 력 : 출신대학교는 첫줄에 기재하고, 대학원의 경우 두 번째줄에 기재하되  
졸업의 경우 최종대학원의 졸업증명서만 제출하고,  
수료의 경우 대학원 수료증명서 및 직전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함께 제출.
- ③ 경 력 : 공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직장명 및 직급을 명기할 것
- ④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           |       |             |     |          |  |
|---------------------------------------------------------------------------------------------------------------------------------------------------------------|-----------|-------|-------------|-----|----------|--|
| 사진(1)<br>3×4cm<br>(최근 6개월<br>이내 촬영한 사진)                                                                                                                       |           | 이 력 서 |             |     |          |  |
|                                                                                                                                                               |           | 성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       | 한 자         |     | 연락처(휴대폰) |  |
|                                                                                                                                                               |           | 주 소   |             |     |          |  |
| 학 력                                                                                                                                                           | 기 간       |       | 학 교 명       |     | 전공(학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 근 무 처 (부 서) | 직 위 | 담 당 업 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증                                                                                                                                                         | 취 득 년 월 일 |       | 자 격 · 면 허 증 |     | 발 급 기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차후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합격취소 또는 채용의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p> <p>2020년      월      일</p> <p>성 명 :                      (인)</p> |           |       |             |     |          |  |

※ ‘학력, 경력, 자격사항’란 부족시 별지 추가 작성 제출 가능.

#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ypical of primary school writing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경력내용, 지원동기, 향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종합사회복지관장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동구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규 채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사항)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병역사항, 자격증 등 |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심사 제외, 응시원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선택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동의거부 가능)

|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
| 학력, 경력, 자기소개 등 |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심사 제외, 응시원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
| 면접심사위원 | 종합사회복지관장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자료 및 채용절차 진행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 자기소개 등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문서보존기간 만료시 파기 |

※ 위의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심사 제외, 응시원서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중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논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규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연번 | 행 정 정 보 명               |
|----|-------------------------|
| 1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주민등록표 등.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 번호 : \_\_\_\_\_ - \_\_\_\_\_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0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 반환장소<br>(주소와 다른<br>경우 기재)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20 -2182호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 남 동 구 청 장

1. 규칙명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2. 폐지이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운영 중인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  
(제정 2008.12.26. 규칙 제720호)

4.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AX 전송시 담당자에게 유선통보 요망)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기획예산과  
/ ☎ 453-2054, FAX 453-2059)
-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5. 폐지규칙(안) : 별첨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년월일 : 2020년 11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정책

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  
로 정하게 됨에 따라 운영 중인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폐지

(제정 2008.12.26. 규칙 제720호)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남동구 규칙 제 호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 폐지규칙안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규 칙**

##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 제정 ) 2008.12.26 규칙 제 720호  
 (일부개정) 2013.08.21 규칙 제83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전문개정) 2014.06.05 규칙 제852호  
 (일부개정) 2015.06.05 규칙 제889호  
 (일부개정) 2016.12.23 규칙 제931호  
 (일부개정) 2019.11.15 규칙 제10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5에 따라 남동구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5.)

1. 주요 구정현안에 관한 사항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용역
  4.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5. 주요 조례 및 규칙 등의 제정사항
  6. 그 밖에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사업 중 구민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개정 2019. 11. 15.)

②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사업별 중점관리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목록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 ①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 ② 구청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세미나·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참석자·발언내용·결정사항·표결내용 등을 사업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 ④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사업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은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1. 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1. 15.)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3., 2019. 11. 15.)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 사항은 「남동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관리·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등록부(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등록부(별지 제4호 서식)는 사업부서의 장에게 비공개로 관리하도록 통보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완료 후 사업관리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자료가 충실히 작성되고 적기에 공개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인센티브)**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추진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부서, 공무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표창 등은 「남동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11. 15.)

## 부 칙(2014. 6. 5. 규칙 제8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시행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 부칙(규칙 제889호, 2015.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시행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931호, 2016. 12. 23.)**

(인천광역시 남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남동구표창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표창 조례』”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014호, 2019. 11. 15.)**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56호

##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재정지원에 관한사항 : (안 제3조)
- 운송원가 산정 용역 실시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재정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적자손실액 산정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안 제11조~ 제14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유광희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87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유광희·황규진·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조성민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남동구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재정지원에 관한사항 : (안 제3조)
- 운송원가 산정 용역 실시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재정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적자손실액 산정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재정지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재정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안 제11조~ 제14조)

### ☐ 본 문 : “별첨”

### ☐ 신 · 구조문 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운행 버스를 말한다.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 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

다.

5.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운송원가 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 으로부터 한정면허를 얻어 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남동구에 있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로 한다.

**제4조(운송원가 산정 용역 실시)** ①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날짜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적자손실액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적자손실액 산정)**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제4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 적자손실액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은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및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지원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남동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적자손실액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② 구청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 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재정지원의 기준, 방법 및 중단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자동차 관리업무 담당 국장, 남동경찰서 및 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남동구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0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수행정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버스운송 담당공무원이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남동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 제3조 (재정지원) 규정으로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 시 예산의 범위 내 적자손실액의 50% 이내의 재정 소요가 예상됨

**2. 비용추계 결과****가. 추계의 전제**

- 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남동구에 있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2개 노선(M6410번, M6439번)에 대해 재정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함
- 비용추계를 위해 필요한 가격기준은 운행개시 이후 발생한 적자손실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추계함
- 적자손실액의 규모는 M6410번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자료를 기준으로 연평균 운송수지를 추계하며, M6439번은 운행기간이 1년 미만으로 업체에서 자체 산정한 월평균 운송수지를 기준으로 연평균 운송수지를 추계함
- 미래의 여객 수요 변경, 운송원가 변동, 운송요금 변경 등 예측 불가능한 사항은 반영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년 동일한 적자손실액이 발생할 것을 전제로 추계함

※ 남동구 경유 광역급행시내버스 현황

| 노선번호  | 기점     | 종점  | 운행개시일       | 대수  | 비고      |
|-------|--------|-----|-------------|-----|---------|
| M6410 | 사리울중학교 | 강남역 | 2011.01.31. | 13대 | 경원여객    |
| M6439 | 인천터미널  | 역삼역 | 2019.10.23. | 8대  | 인천제물포교통 |

## 나. 추계 결과

## ○ M6410번 연평균 적자손실액

(단위 : 천원)

| 연도별        | 운송원가             | 운송수입             | 운송수지            | 비 고 |
|------------|------------------|------------------|-----------------|-----|
| 2011       | 1,328,122        | 903,584          | -424,538        |     |
| 2012       | 1,960,043        | 1,558,287        | -401,756        |     |
| 2013       | 2,044,721        | 1,707,076        | -337,645        |     |
| 2014       | 2,332,318        | 1,756,230        | -576,088        |     |
| 2015       | 2,477,692        | 1,907,375        | -570,317        |     |
| 2016       | 2,446,510        | 2,018,458        | -428,052        |     |
| 2017       | 2,272,485        | 2,073,225        | -199,260        |     |
| 2018       | 2,481,928        | 2,052,256        | -429,672        |     |
| 2019       | 2,820,962        | 2,262,163        | -558,799        |     |
| <b>연평균</b> | <b>2,240,531</b> | <b>1,804,295</b> | <b>-436,236</b> |     |

※ 경기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회계감사 결과 자료

## ○ M6439번 연평균 적자손실액

(단위 : 천원)

| 월별         | 운송원가             | 운송수입           | 운송수지            | 비 고    |
|------------|------------------|----------------|-----------------|--------|
| 2019.11    | 134,323          | 43,290         | -91,033         | 10대 운행 |
| 2019.12    | 155,961          | 61,256         | -94,705         | 10대 운행 |
| 2020.01    | 152,158          | 56,025         | -96,133         | 10대 운행 |
| 2020.02    | 148,727          | 57,125         | -91,602         | 10대 운행 |
| 2020.03    | 118,068          | 47,550         | -70,518         | 7대 운행  |
| 2020.04    | 105,619          | 60,867         | -44,752         | 6대 운행  |
| 2020.05    | 107,825          | 61,706         | -46,119         | 6대 운행  |
| 2020.06    | 88,719           | 61,104         | -27,615         | 6대 운행  |
| 2020.07    | 86,687           | 59,556         | -27,131         | 6대 운행  |
| 2020.08    | 86,268           | 38,554         | -47,714         | 5대 운행  |
| 2020.09    | 73,315           | 26,741         | -46,524         | 5대 운행  |
| <b>월평균</b> | <b>114,334</b>   | <b>52,161</b>  | <b>-62,172</b>  |        |
| <b>연평균</b> | <b>1,372,004</b> | <b>625,935</b> | <b>-746,068</b> |        |

※ 인천제물포교통(주) 자체 산정 자료

## ○ 연간 재정지원 예상액

(단위 : 천원)

| 구분         | 연평균<br>적자손실액 | 지원율 | 지원예상액          | 비 고 |
|------------|--------------|-----|----------------|-----|
| M6410      | 436,236      | 50% | 218,118        |     |
| M6439      | 746,068      | 50% | 373,034        |     |
| <b>합 계</b> |              |     | <b>591,152</b> |     |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환경교통국 자동차관리과장 이 종 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br>(2021년) | 2차년도<br>(2022년) | 3차년도<br>(2023년) | 4차년도<br>(2024년) | 5차년도<br>(2025년) | 계         |
|---------------------|-------|-----------------|-----------------|-----------------|-----------------|-----------------|-----------|
| 세 입                 |       |                 |                 |                 |                 |                 |           |
| 일반회계                |       |                 |                 |                 |                 |                 |           |
| 세 출                 |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2,955,760 |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br>재정 지원 |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2,955,760 |
| 재원 조달               |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2,955,760 |
| 의존<br>재원            | 소 계   |                 |                 |                 |                 |                 |           |
|                     | 보조금   | 국비              |                 |                 |                 |                 |           |
|                     |       | 시비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자<br>수<br>입         | 소 계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2,955,760 |
|                     | 지방세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591,152         | 2,955,76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br>(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 【참고자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구조·설비의 확충·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5. 19.>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20. 5. 19.>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2020. 5. 19.>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 2020. 5. 19.>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⑦ 국가 또는 시·도는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58호

##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민의 인권을 위하여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책무 및 구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3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남동구민의 인권을 위하여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책무 및 구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기본계획 수립,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1조)

### ☐ 분 문 : “별첨”

### ☐ 신 · 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민”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구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인권 관련 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연구기관 및 법조계 등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제7조(인권교육) : 강사수당 등
- 제11조(위원회 운영) : 참석수당 등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한 인권 기본조례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감사실장 유재필

[참고자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헌법」 제10조<br><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법」 제2조<br><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0. 2. 4.>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권을 말한다.
2.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사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의 조

치 등을 마련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미추홀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인권 교육을 제도화하는 등 행정전반에서 구민의 인권을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을 위한 책임 과 역할을 인식하고, 미추홀구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인권증진 정책

**제6조(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미추홀구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전략
3. 구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①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제11조의 미추홀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3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증진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권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집행 및 교육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센터(이하“인권센터”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
2.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홍보
3.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의 방법 등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가. 미추홀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미추홀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다.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라. 그 밖에 구청장, 미추홀구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6. 미추홀구 인권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3장 인권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9조에서 정한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요구 및 제20조에 따른 개선 등의 권고
  4.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
  5.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6.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한 자문 및 평가
  7. 인권교육에 관한 자문
  8.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내외

나. 교육, 법률, 인권, 주민자치 관련 활동가 또는 전문가

다. 인권 약자의 권익 증진에 노력하였거나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미추홀구 주민으로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인권 증진에의 참여 의지를 소명하여 공개모집에 지원한 사람. 다만, 이 경우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대신 관심과 참여의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위원의 의사에 어긋나게 위촉 해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더 이상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조회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미추홀구 소속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장 인권영향평가

**제19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 및 정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미추홀구 행정기구에 따른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

한 경우

2. 정책이 구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인권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인권영향평가 권고)** ① 위원회는 제19조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에게 조례 제정·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미추홀구의 조례,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21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59호

##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4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민창기 의원 외 4명

### ☐ 제안이유

- 남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개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 「지방재정법」 제48조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2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
2.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
3.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이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남동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예산낭비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우편, 팩스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하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가 개선되어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으로 「국민 제안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

|     |                 |  |      |  |
|-----|-----------------|--|------|--|
| 신고자 | 성명              |  | 생년월일 |  |
|     | 주소<br>(거주지/사업장) |  |      |  |
|     | 연락처             |  |      |  |
|     | e-mail          |  |      |  |

|                           |                                                                                                                                                      |  |    |  |
|---------------------------|------------------------------------------------------------------------------------------------------------------------------------------------------|--|----|--|
| 구분                        | <input type="checkbox"/> 예산낭비 신고 <input type="checkbox"/> 예산절감 제안                                                                                    |  |    |  |
| 답변방법                      |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메일 <input type="checkbox"/> 팩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 신고내용                      | 사업명                                                                                                                                                  |  | 위치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5px;">           ※ 사업대상(수혜자), 사업량, 추진방법 및 소요예산(추정액, 자부담) 등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가능         </div> |  |    |  |
| 년 월 일      제안자 :      (인) |                                                                                                                                                      |  |    |  |
| 남동구청장 귀하                  |                                                                                                                                                      |  |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5조(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 제1항에서 예산낭비신고 등으로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김녕

[참고자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br><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제48조2<br><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2<br><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한 자에게 법 제48조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감시기구를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 및 소속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으로 하고, 예산 담당 실장·국장 또는 담당관이 2명 이상이면 그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0호

##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 례 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반미선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5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반미선·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보조금 지원 및 신청, 정산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남동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동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남동구 관내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 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보조금 정산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경우회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4조(보조금 지원) 제1항에서 구청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 비용발생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미영

[참고자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br><input type="checkbox"/>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9조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시행 2020. 7. 1] [법률 제17167호, 2020. 3. 31, 일부개정]

경찰청(경무과) 02-3150-0705

제15조(재정) ① 경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 수입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1. 5. 30.>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 □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제9조(보조대상 사업)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개정 2019. 6. 28.)
3. 인천광역시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경우
4.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지정 기부금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1호

##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대형서점조차도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3. 입법 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안나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6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김안나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온라인서점 등으로 인해 대형서점조차도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소규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순환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서점을 활성화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서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지역서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구민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서점”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남동구의 지역서점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서점 지원 시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여건
2.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
3. 제6조의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서점의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현황,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창업상담, 경영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2. 지역서점 네트워크, 공동행사의 추진 등 경쟁력 강화 지원
3.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4. 도서관, 출판사, 저자 등과 연계한 행사의 개최 지원
  5.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그 밖에 지역서점이 독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관내 학교에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는 남동구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 사항
2.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서점 독서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22조에 따라 구성된 남동구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 현황 등을 남동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서점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표창)** 구청장은 남동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등록된 남동구 지역서점은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등록된 지역서점으로 본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제6조(지역서점 지원 사업)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서점 우선 구매 등을 통한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구민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정안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참고자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br><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2호

##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제2조)
- 성인문해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경비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7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정재호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비문해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향상을 위한 성인 문해교육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문해자들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성인문해교육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경비의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
-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3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충분한 문해력을 개발하지 못해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함으로  
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  
하게 보장한다.

③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  
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비문해자 파악을 위한 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수립
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6.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
7.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성인문해 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성인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과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
  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남동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
  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남동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표창)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관련조문

○ 「남동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조례」 제7조(경비 보조 및 지원)

-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조례」를 따른다

#### 나. 비용발생 요인

- (1) 남동구 직영 과정(남동글벗학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교육부공모)을 운영 중임.  
기존 학습자 및 신규 학습자 등이 해당 과정에서 교육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됨.
- (2) 성인문해교육 사업 지원으로 인한 인식 확산을 통해 성인문해 교육 운영 기관의 학습 수요 증가 및 남동구 문해율 감소를 위한 재정 지원 증가 예상됨.

### 2. 비용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2021년 학력인정 과정인 남동글벗학교 운영에 따른 수강생 증가 및 학급 확대 운영이 요구되며 성인문해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나. 추계 결과

### (1) 남동글벗학교(학력인정과정) 운영에 따른 비용 추계

- 단계별 학급 구성에 따른 추가 비용  
: 강사료, 현장체험학습, 교재비 등 교과 과정운영에 따른 운영

### (2)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따른 비용 추계

-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국비 대응 투자비율(국 50% : 구 50%)
- 성인문해교육 운영기관 증가와 학습 수요 증가로 인한 지원 확대 필요

## 다. 재원조달 방안

- (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비 대응투자로 추진
- (2) 남동글벗학교 운영(학력인정반, 기존학습반) 전액 구비로 추진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4. 부대의견 : 없음

작성자 : 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장 성길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 1차년도<br>(2021년) | 2차년도<br>(2022년) | 3차년도<br>(2023년) | 4차년도<br>(2024년) | 5차년도<br>(2025년) | 계       |
|---------------------|-------|-----------------|-----------------|-----------------|-----------------|-----------------|---------|
| 세 입                 |       | 12,000          | 16,000          | 18,000          | 20,000          | 22,000          | 88,000  |
| 성인문해교육<br>지원사업(국비)  |       | 12,000          | 16,000          | 18,000          | 20,000          | 22,000          | 88,000  |
| 세 출                 |       | 52,900          | 62,000          | 67,000          | 72,000          | 77,000          | 330,900 |
| 성인문해교육<br>지원사업      |       | 24,000          | 32,000          | 36,000          | 40,000          | 44,000          | 176,000 |
| 남동글벗학교              |       | 28,900          | 30,000          | 31,000          | 32,000          | 33,000          | 154,900 |
| 재원 조달               |       |                 |                 |                 |                 |                 |         |
| 의존<br>재원            | 소 계   | 12,000          | 16,000          | 18,000          | 20,000          | 22,000          | 88,000  |
|                     | 보조금   | 국비              | 12,000          | 16,000          | 20,000          | 22,000          | 88,000  |
|                     |       | 시비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                     | 조정교부금 |                 |                 |                 |                 |                 |         |
| 자체<br>수입            | 소 계   | 40,900          | 46,000          | 49,000          | 52,000          | 55,000          | 242,900 |
|                     | 지방세   |                 | 40,900          | 46,000          | 52,000          | 55,000          | 242,900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
| 지 방 채               |       |                 |                 |                 |                 |                 |         |
| 기 금                 |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 기 타<br>(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참고자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교육기본법」 제3조, 제4조, 제10조<br><input type="checkbox"/> 「평생교육법」 제2조, 제5조, 제39조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 □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10조(사회교육)**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② 사회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

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4. 23.>

**제39조(문해교육의 실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4. 1. 28.]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3호

##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안 제1조~제4조)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8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민창기 의원 외 4명

### ☐ 제안이유

-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구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대상(안 제1조~제4조)
-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지원 사업(안 제5조~제7조)
-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9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대중교통 운전자, 의료·사회복지·돌봄 종사자, 물류·배달업 종사자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구청장이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필수업종의 남동구 소재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남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조제1호의 재난 지정에 관한 사항
2.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제5조(실태조사), 제7조(지원 사업)
  - 필수업종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남동구 소재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경비, 지원 사업 추진 경비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 3. 미첨부 사유

-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업은 재난 발생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 유동적이므로 비용추계가 불가함.

작성자 :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장 박광철

[참고자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9조<br><input type="checkbox"/>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및 제4조<br><input type="checkbox"/>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동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동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
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 - 64호

##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등록대상동물 등 용어 추가 정의(안 제2조)
- 소유자 등의 의무 사항 추가(안 제5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의거 ‘시행규칙’ 삭제(안 제11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남동구의회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6,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9 |
|----------|------|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김윤숙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 및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등록대상동물 등 용어 추가 정의(안 제2조)
- 소유자 등의 의무 사항 추가(안 제5조)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 자치법규 입법 기준에 의거 ‘시행규칙’ 삭제(안 제11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동물보호법」 제2조,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물보호법·”를 “「동물보호법」”으로, “제8조제2항 제3호의2”를 “제2조제1호의3”으로, “등,”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나.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5.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성명, 전화번호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적힌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3.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의 제1항 중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를 “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피학대”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동물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 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신청서 등이 송부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반려동물”이란 <u>· 동물보호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개·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 1. -----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br>----- 등 -----<br>-----.                                                                                                                                       |
| 2. (생략)<br><u>&lt;신설&gt;</u>                                                                            | 2. (현행과 같음)                                                                                                                                                                                          |
|                                                                                                         | 3.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 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br>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br>나.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 3. (생략)<br><u>&lt;신설&gt;</u>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                                                                                                         | 5.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                                                                                                                                                                     |

# <신 설>

## 4. (생 략)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

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6.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 7. (현행 제4호와 같음)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 등의 성명, 전화번호 및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적힌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2.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3.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4. (생 략)

<신 설>

5. (생 략)

③ (생 략)

<신 설>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

-----  
-----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

3. 4. (현행과 같음)

5. 등록대상동물에 관한 사항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구청장 또는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동물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 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고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로부터 신청서 등이 송부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요인

- 조례안 제6조의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동물등록대행자 지정 등 동물등록 대행비 사업의 범위 규정.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해당)

###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의2(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등록 대행비 사업’은 2016년~2020년까지 동물등록제 지원 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연평균 22,080천원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

작성자: 재정경제국 농축수산과장 유재구

[참고자료]

## 관계법령 검토와 발체사항

|              |                                                                                                                                                                                   |
|--------------|-----------------------------------------------------------------------------------------------------------------------------------------------------------------------------------|
| 관련법령         | <input type="checkbox"/> 「동물보호법」 제2조, 제4조, 제12조 및 제13조<br><input type="checkbox"/>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br><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관련법령]

##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나.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중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실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절차, 변경신고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19. 3. 12.>

1.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제1호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2019. 3. 21.>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2020. 8. 21.>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9. 3. 21.>

④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하려는 동물이 영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등록대상 월령(月齡) 이하인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1.>

[시행일 : 2021. 2. 12.] 제8조제2항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1., 2020. 8. 21.>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3. 21.>

##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판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알뜰)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

10일

|                                          |                          |                             |      |
|------------------------------------------|--------------------------|-----------------------------|------|
| 신청인<br>(신고인)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br>(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
|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                          |                             |      |

|                           |    |    |      |          |
|---------------------------|----|----|------|----------|
| 동물관리자<br>(신청인이<br>법인인 경우) | 성명 | 직위 | 전화번호 | 관리장소(주소) |
|---------------------------|----|----|------|----------|

|    |        |    |     |    |     |   |     |     |      |
|----|--------|----|-----|----|-----|---|-----|-----|------|
| 동물 | 동물등록번호 |    |     |    |     |   |     |     |      |
|    | 이름     | 품종 | 털색깔 | 성별 | 중성화 |   | 출생일 | 취득일 | 특이사항 |
|    |        |    |     | 암  | 수   | 여 |     |     |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유자                                                         |      |      |
|      | 주소                                                          |      |      |
|      | 전화번호                                                        |      |      |
|      |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br>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br>동물등록번호                  |      |      |
|      | 기타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 ] 등록대상동물의 사망 [ ]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후 회수 [ ] 기타 |      |      |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장소

등록대상동물 분실 또는 사망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 제15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동물등록대행자는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장착하고 등록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확인하고, 통보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동물등록대행자의 선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6호

##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입법 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정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22,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최재현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91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사용 관련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 본 문 : “별첨”

###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 참 고 자 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남동구 규칙 제 호

## 남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의 업무 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남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남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 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남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남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해당 규칙안은 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 및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로 소요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남동구의회사무국장 임 덕 규

## [참고자료]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지방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16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의회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미추홀구의회”라 한다)의 의회 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 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7. 기타 미추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내용,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미추홀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2년에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라 계양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 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를 말한다),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의장은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장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엄중 경고하고, 2회이상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7호

##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점검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385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 월 9일

발 의 자 : 최재현 의원

찬 성 자 : 유광희 의원 외 5인

☐ 제안이유

-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점검 및 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우수사업장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조, 제8조의2
- 「근로기준법」 제66조, 제6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 따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

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및 홍보 활동)**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남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1. 비용발생요인**

- 제4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추진 비용
- 제5조 교육 및 홍보 활동 비용
-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단 운영 비용
- 제7조 사업비의 지원
- 제8조 우수 사업장 선정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 제1호에 따라 미작성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lt; 1년 평균 소요금액 : 48,900천원 &gt;

##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2,400천원

- 청소년 교육 : 200천원/1시간 × 연10회 = 2,000천원
-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 교육 : 200천원/1시간 × 연2회 = 400천원

## ○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 : 3,000천원

-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 3,000천원

## ○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 : 10,000천원

- 실태조사원 모집 운영 : 10명 × 30개소 × 15천원 = 4,500천원
- 설문지 설계 자료분석 비용 : 3,000천원
- 책자 인쇄 및 토론회 : 2,500천원

## ○ 청소년 노동인권단 운영 : 30,000천원

- 전담인력 배치 : 2,500천원 × 12월 = 30,000천원

## ○ 우수사업장 선정 : 3,500천원

- 현판 : 150천원 × 10개소 = 1,500천원
- 인센티브 : 200천원 × 10개소 = 2,000천원

작성자 : 주민복지국 여성가족과 김종수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                                                                                                                                                                                        |
|--------------|----------------------------------------------------------------------------------------------------------------------------------------------------------------------------------------|
| 관련법령         | <div data-bbox="437 712 1241 757">□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조, 제8조의2</div> <div data-bbox="437 824 1038 869">□ 「근로기준법」 제66조, 제67조</div> <div data-bbox="724 1055 1082 1099">“내용은 별지 작성”</div> |
| 관련법규<br>정비대상 | “해당 없음”                                                                                                                                                                                |
| 관련자료         | “해당 없음”                                                                                                                                                                                |

## [참고자료]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86호, 2018. 12. 18., 일부개정]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상담을 청소년에게 실시하여야 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

## □ 근로기준법

[시행 2020. 5. 26.]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해고, 취업규칙, 기타), 044-202-7534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8호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규정 신설 : 안 제5조제1항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변경사항 명시 :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2386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9일

발 의 자 : 강경숙·김윤숙 의원

찬 성 자 : 이선옥 의원 외 5명

### ☐ 제안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규정을 신설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6개월로 변경하여  
신청기간 경과에 따른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안내 규정 신설 : 안 제5조제1항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 기간 변경사항 명시 :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중 “60일” 을 “6개월” 로, “동주민센터” 를 “동행정복지센터”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60일” 을 “6개월” 로 한다.

-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 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지원신청) <신설>                                                                                                                                  | 제5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 및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 통보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u>60일</u> 이내에 거주지 <u>동주민센터</u> 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② -----<br>-----<br>----- <u>6개월</u> -----<br>-- <u>동행정복지센터</u> -----<br>--.                                                                       |
| 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u>60일</u>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일부개정 2017. 12. 22.) | ③ -----<br>-----<br>----- <u>6개월</u> -----<br>-----<br>-----<br>-----<br>-----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주민의 알권리 보호 및 신청기한 연장을 통한 주민편의를

위한 정비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보육정책과장 박 미경(인)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0-69호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9일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을 등록식으로 하여 정견 발표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 2)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신설(안 제8조의 3)
- 의장·부의장 임기에 대한 사항 세부 규정(안 제9조)
-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다른 직의 사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1조의2)

#### 3. 입법예고 기간 : 2020. 11. 9. ~ 11. 16.(7일간)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 유 경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년월일 :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 이 유 경 의원  
찬 성 자 : 정 재 호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의장단 선출방식을 등록식으로 하여 정견 발표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 선거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신설(안 제8조의3)
- 의장·부의장 임기에 대한 사항 세부 규정(안 제9조)
-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다른 직의 사임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1조의2)

### ☐ 본 문 : “별첨”

### ☐ 신 · 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8조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제9조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제8조의4

남동구 규칙 제 호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복하여 입후보 할 수 없다.

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기재순위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2(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다른 직의 사임)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u>&lt;신 설&gt;</u></p> | <p><u>제8조의2(의장 · 부의장 선거 후보자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전 일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u></p> <p><u>②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중복하여 입후보 할 수 없다.</u></p> <p><u>③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u></p> <p><u>④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u></p> |
| <p><u>&lt;신 설&gt;</u></p> | <p><u>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u></p> <p><u>②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u></p>                                                                                                                                                                                                                 |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신 설>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신 설>

<신 설>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② -----  
---. -----  
-----  
----- 날-----  
-----  
-----.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2(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따른 다른 직의 사임)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선거일 2일 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남동구의회 제    대 (전·후)반기  
입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                    |  |                  |             |
|--------------------|--|------------------|-------------|
| 접수번호               |  | 접 수 일 시          | (    :    ) |
| 성    명<br>(한    자) |  | 생    년    월    일 |             |
| 주    소             |  |                  |             |
| 전화번호               |  |                  |             |
| 신청직위               |  |                  |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후보자) : (서명)

남동구의회 귀중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임 덕 규 (인)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 제48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 제8조의2(후보자 등록)** ①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전 3일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하고, 등록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한다.
- ③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 할 수 없다.
- 제8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②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 등으로 표시하고,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 ③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 제8조의4(정견발표)** ①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일에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 ②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 제8조의2(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의장 또는 부의장 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일 18시까지 한다.(단,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③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중복 입후보할 수 없다.

- 제8조의3(정견발표)**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4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재순위 등)**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의 기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조(의장·부의장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지방의회 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 11. 11.)

⑥ 의장선거등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으로 하되 최다선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로 한다. (신설 2011. 11. 11, 일부개정 2015. 7. 31.)

**제9조(의장·부의장 임기)**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제11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고 시

남동구 고시 제 2020-177호

통·반 구역조정 결정고시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시 행 일 자 : 2020. 11. 11.부터 시행
- 통·반 구역 조정 내역 : “첨부문서 참조”

2020년 11월 10일

남 동 구 청 장

[첨부]

## -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능률을 위한 - 남동구 통·반 구역 조정 계획

- ❖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해 과밀화된 남동구 논현2동 해당 통을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에 의거 조정하여,
- ❖ 형평성 있는 세대수 배분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추진

### 1.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획정기준)

반은 30세대 이상 100세대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통은 2~8개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2(통·반의 개편)

동장은 전출·입 등 변동사항에 따른 통·반의 세대수가 통·반의 획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1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여야 한다.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 조정기준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 적용
  - 반 : 30내지 100세대,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통 : 2~8개 반으로 구성,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 가능

## 3. 조정사유

- 신규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통·반 신설로 행정 효율성 추진
- 각 통간 형평성 있는 세대수 기준으로 배분 추진

## 4. 조정내역

- 총괄내역

| 구 분   | 조 정 전 |       | 증 감 |    | 조 정 후 |       |
|-------|-------|-------|-----|----|-------|-------|
|       | 통     | 반     | 통   | 반  | 통     | 반     |
| 남 동 구 | 879   | 3,775 | +1  | +2 | 880   | 3,777 |
| 논현2동  | 46    | 215   | +1  | +2 | 47    | 217   |

- 조정내역

| 구 분  | 조정대상(현행) |   | 조 정 후 |     | 증감현황 |    |
|------|----------|---|-------|-----|------|----|
|      | 통        | 반 | 통     | 반   | 통    | 반  |
| 합 계  | -        | - | 1개통   | 2개반 | +1   | +2 |
| 논현2동 | 신설       |   | 47통   | 1반  | +1   | +2 |
|      |          |   |       | 2반  |      |    |

## 통·반구역조정현황

▷ 승인 일자 : 2020. 11. 10.

| 구분<br>동명 | 현행  |       | 증감 |   | 조정후 |       | 비 고 |
|----------|-----|-------|----|---|-----|-------|-----|
|          | 통   | 반     | 통  | 반 | 통   | 반     |     |
| 계        | 879 | 3,775 | 1  | 2 | 880 | 3,777 |     |
| 구월1동     | 48  | 189   | 0  | 0 | 48  | 189   |     |
| 구월2동     | 49  | 211   | 0  | 0 | 49  | 211   |     |
| 구월3동     | 61  | 220   | 0  | 0 | 61  | 220   |     |
| 구월4동     | 36  | 171   | 0  | 0 | 36  | 171   |     |
| 간석1동     | 43  | 202   | 0  | 0 | 43  | 202   |     |
| 간석2동     | 35  | 155   | 0  | 0 | 35  | 155   |     |
| 간석3동     | 54  | 217   | 0  | 0 | 54  | 217   |     |
| 간석4동     | 45  | 215   | 0  | 0 | 45  | 215   |     |
| 만수1동     | 44  | 176   | 0  | 0 | 44  | 176   |     |
| 만수2동     | 42  | 157   | 0  | 0 | 42  | 157   |     |
| 만수3동     | 39  | 132   | 0  | 0 | 39  | 132   |     |
| 만수4동     | 43  | 211   | 0  | 0 | 43  | 211   |     |
| 만수5동     | 33  | 184   | 0  | 0 | 33  | 184   |     |
| 만수6동     | 41  | 185   | 0  | 0 | 41  | 185   |     |
| 장수서창동    | 32  | 121   | 0  | 0 | 32  | 121   |     |
| 서창2동     | 53  | 183   | 0  | 0 | 53  | 183   |     |
| 남촌도림동    | 44  | 193   | 0  | 0 | 44  | 193   |     |
| 논현1동     | 46  | 248   | 0  | 0 | 46  | 248   |     |
| 논현2동     | 46  | 215   | 1  | 2 | 47  | 217   |     |
| 논현고잔동    | 45  | 190   | 0  | 0 | 45  | 190   |     |